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515 호

1975. 8. 28.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96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여비조례 3

◎ 규 칙

제 1495호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개정규칙 4

◎ 훈 령

제 421호 : 서울특별시경찰관파출소형사제치규정제치규정 12

제 422호 : 서울특별시의회신고설터운영규정제치규정 12

제 423호 : 서울특별시형사페트물카(순찰제) 운영규정제치규정 12

◎ 관 리 규 정

제 43호(서울특별시 지하철관리규정) : 전차승무원근무시간 산출규정중
개정규정 13

제 44호(서울특별시 지하철관리규정) : 운전사명복무규정중개정규정 13

제 45호() : 전차운전취급규정중개정규정 13

제 46호() : 사고복구관리규정중개정규정 30

제 47호() : 선로지장취급규정중개정규정 3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12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신설 및 지적승인	33
제 128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 (지하보도) 결정 및 지적승인	34
제 130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35
제 131 호 : 도시계획 (재개발 및 특정가구정비 지구) 지적고시	35
제 13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36
제 133 호 : 비료판매등록고시	37
제 134 호 : 사방지의 지정	37
제 135 호 : 비료제조업허가실 효고시	46
제 136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	46
제 137 호 : 도시계획용지 지구일부변경 (해제) 지적승인	47

◎ 공 고

제 185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47
제 188 호 : 모차구획정리사업지구내환지계획 지일부변경을위한 공람공고	48
제 189 호 : 제 2 회 소방원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공고	49
제 191 호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공람	51
제 19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53
제 19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54

◎ 예 규

제 302 호 : 서울특별시경찰국의부실운영규정폐지규정	58
제 303 호 : 고물영 업허가사무취급요령폐지규정	58
제 304 호 : 전당모영 업허가사무취급요령폐지규정	58
제 305 호 : 어린이돌찾기센터운영요강폐지규정	59
제 306 호 : 비상경제실시규정폐지규정	59
제 307 호 : 수사지령운영요강폐지규정	59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여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생

1975 년 8 월 25 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69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여 비 조 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의 10 종으로 한다.

제 3 조 (여비의 정액)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의 예에 의한다.

제 4 조 (관내여비) 관내출장에 있어서는 육로 편도 3km 이상인 때에는 정액의 현지교통비를, 육로 편도 3km 미만인 때에는 정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액 이내에서 그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제 5 조 (여비정액의 감액) 교육감은 예산의 부족등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할 수 있다.

제 6 조 (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비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8월 28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495 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 정 규 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31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면접시험은 다음 평점요소마다
각각 상(3점), 을(2점), 하
(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
로 한다.

1. 유신이념의 실천능력
2.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공무원으
로서 의 정신자세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및 발전성과 사물을
보는 태도
5.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제 35 조 제 1 항중 "별표 4"를 "별
표 4 및 별표 4의 2"로 한다.

제 37 조 다음에 제 37 조의 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 37 조의 2 (전직시험에 있어서 특전
을 받는 직렬별 자격증 구분)

영제 29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용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
및 별표 4의 2에 의한다.

제 90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훈련실적은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서 받은
2주이상(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
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교육훈련
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이상), 훈련의 실적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
위급류 및 등급에서 받은 훈련성
적을 평정한다.

제 94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제
32 조 제 1 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별표 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1.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 노동청장이 발급한것 또는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 (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 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

한 교육이수증: 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 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최근 5년이내에 받는 것에 한한다.

3. 주산능력검정 합격증: 문교부장관이

발급한것 또는 주산능력검정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 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제 100조 제 1항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이 전입, 전출, 전직 한

경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중 구분 12 타자자격증 (노동청장발행)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노동청장발행 또는 타자능력검정

실시하는 검정기관 (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에 한한다)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 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발행)

별표 13의 2 중 기재 및 철도현업의 기재분야 8등급 이하란 원동기

제 1종 이하를 다음에 자동차정비 기능사 2급 (3급 자동차정비사), 중개 조종면허를 추가한다.

별표 14 중 주산특급을 주산 1단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6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90조 제 3항의 규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특수직급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구 분 직 렬	3 급 이 상	4 급	5 급
사 서	정 사 서	정사서 또는 준사서	정사서 또는 준사서
수 익	수 의 사	수 의 사	
의 무 (일반의무분야)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또는 한의사	
의무(치위분야)	치 과 의 사	치 과 의 사	
약 무	약 사	약 사	
간 호	간 호 원	간 호 원	간 호 원
선박(선박분야 중 항해)	갑종선장, 어선갑종 선장, 갑종 1 등 및 2 등항해사, 어선갑종 1 등 및 2 등항해사	울종선장, 어선울종선 장, 울종 1 등항해사 어선울종 1 등 항해사	울종 2 등항해사, 어선 울종 2 등항해사, 병종 항해사, 소형선박항해 사
선박(선박분야 중 기관)	갑종기관장, 갑종 1 등 및 2 등기관사 갑종 선박 통신사	울종기관장, 울종 1 등 기관사, 울종선박통 신사	울종 2 등기관사, 병종 기관사, 소형선박기 관사, 병종선박통신사
지 적	지적기사 1 급 (지적측량사)	지적기사 2 급 (지적측량사)	지적기사 2 급 (지적측량사)

비고: 위표중 () 속에 자격증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 이전의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증의 명칭임.

(별표 4 의 2)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의응시자격및 특전이부여되는자격증구분표				
직	구 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기계	기계 분야	기계기술사 (전설기계) (전 설기술자 갑류 (기계))	전설기계사 1급 (전설기술자 을류 (기계))	전설기계기사 2급 (전설기술자 병류 (기계))
	자동차 정비 분야		자동차 정비기사 2급 (1급자동차 정비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1급 (2급 자동차정비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2급 (3급자동차 정 비사)
	중기 분야 제량 분야		제량기사 1급 (1급 제량사) 제량기사 2급 (2급제량사)	중기조정면허 제량기능사 2급 (3급 제량사)
전기	전기 분야	전기기사 1급 (전 기주임기술자 1급)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기술자갑류)	전기기사 2급 (전기 주임기술자 2급) 전 기공사기사 2급 전 기기술자 을류)	전기기사 2급 (전기 주임 기술자 3급) 전 기공사 기능사 2급 전기기술자 병류)
	원자력 분야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 또 는일반) 원자로조정사. 원자 로조정 감독자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 (특수 또는 일반) 원자로조정사. 원자 로조정 감독자	

구 분 직 렬		3 급 이 상	4 급	5 급
공업 연구	기 계 분 야	기계기술사 (기술사 (기계부문))	기계기술사 (기술사 (기계부문))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전 기 분 야	기계기술사 (기술사 (전기부문))	전기기술사 (기술사 (전기부문))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섬 유 분 야	섬유기술사 (기술사 (섬유부문))	섬유기술사 (기술사 (섬유부문))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화 공 분 야	화학기술사 또는 산업융용기술사 (요업) (기술사 화학부문))	화학기술사 또는 산업융용 기술사 (요업) (기술사 화학부문))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기사)
	금 속 분 야	금속기술사 (기술사 (금속부문))	금속기술사 (기술사 (금속부문))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구 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직 별	농 업 분 야	산업용용기술사 (농예화학) 기술	산업용용기술사 (농예화학) (기술사)	
농촌 지도				
농업 연구	"	사 (농업부문: 농 화학)) 산업용용 기술사 (식품제조 가공) (기술사 (농업부문: 식품 가공)) 기술사 (농업부문: 작물 기술사 (농업부문: 식물방역)	(농업부문: 농화학) 산업용용 기술사 (식품제조가공) (기 술사 (농업부문: 식 품가공)) 기술사 (농업부문: 작물) 기술사 (농업부문: 식물방역)	
농업 연구 농촌 지도	잠 업 분 야	섬유기술사 (생사 (기술사: 농업부 문: 잠사)	섬유기술사 (생사) 기술사 (농업부문: 잠사)	
농업 연구 농촌 지도	축 산 분 야	기술사 (농업부문: 축산)	기술사 (농업부문: 축산)	
농업 연구	가축위생분야	수 외 사	수 외 사	수 외 사
보	진	의사, 한의사, 치 과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굴리치 로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위생 시험사, 위생사, 영양사.	의사, 한의사, 치 과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위생 시험사 위생사 영양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위생 시험사, 위생사, 영양 사.

구 분 직 렬		3 급 이 상	4 급	5 급
보건 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 또는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 또는 일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 또는 일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의 학 분 야	외사, 한외사, 치 과외사	외사, 한외사, 치 과외사	외사, 한외사, 치 과외사
	공중보건분야	외사, 한외사, 약사 수의사, 치과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간호원	외사, 한외사, 약사 수의사, 치과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사, 위생시 험사, 간호원	외사, 한외사, 약사 수의사, 치과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영양사, 간호 원, 간호보조원
	약 학 분 야	약 사	약 사	약 사
토목	일반토목분야	토목기술사(시공) (건설기술자감류 (토목)) 측지기사 (1급(1급측량기사)	토목기사 1급(건설 기술자율류(토목)) 측지기사 2급(2 급측량사)	토목기사 2급(건설 기술자병류(토목)) 측지기사 2급(2급 측량사)
	수 도 업 무 분 야		제량기사 1급(1급 제량사) 제량기사 2 급(2급제량사)	제량기능사 2급 (3급제량사)

직	구 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건축	1급건축사 건축기술사(건축시공) (건설기술자감류(건축))	2급건축사 건축시공기사 1급(건설기술자감류(건축))	2급건축사. 건축시공기사 2급 (건설기술사 병류(건축))
통신	유선통신분야		인쇄통신기능사 2급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통신기능사 2급 (음향급유선통신사)	인쇄통신기능사 2급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통신기능사 2급 (음향급 유선통신사)
	무선통신분야	전파통신기사 1급 (제 1급무선통신사)	전파통신기사 2급 (제 2급무선통신사)	전 파통신기능사 2급 (제 3급무선통신사) 특수급 무선통신사
통신 기술	통신기계분야 통신선로 분야	유선설비기사 1급 (1급 유선기술사)	유선설비기사 2급 (2급유선기술사)	유선설비기능사 2급 (3급유선기술사)
전송 기술	방송기술분야			
	무선기술분야	무선설비기사 1급 또는 2급(제 1급 무선기술사 또는 제 2급 무선기술사)	무선설비기사 2급 (제 2급무선 기술 사)	무선설비기능사 2급 (제 3급무선기술사) 제 1, 2, 3급 아 마추어 무선기사 특수급 무선기사
비고: 원표중 () 속의 자격증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이전의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증 명칭임.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관파출소형사배치
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8. 28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서울특별시 훈령 제 421 호

서울특별시 경찰관파출소형사
배치 규정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 훈령 제 232 호 (70.9.1)
서울특별시 경찰관파출소 형사배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19일 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피해신고센터 운영 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8. 28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서울특별시 훈령 제 422 호

서울특별시 피해신고센터 운영
규정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 훈령 제 333 호 (70.9.1) 서
울특별시 피해신고센터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19일 부
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형사파트물카 (순찰제)
운영 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서울특별시 훈령 제 423 호

서울특별시 형사파트물카 (순찰
제) 운영 규정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 훈령 제 326 호 (70.
9.1) 서울특별시 형사파트물카
(순찰제)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19
일 부터 적용한다.

관 리 규 정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
관 리 규 정 제43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전차승무원 근무
시간산출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차승무원 근무
시간 산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승무시간) 승무원의 1회계
속승무시간은 3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일부터 시
행한다.

◎서울특별시규정제 4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사령
부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전사령 부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8 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 받
2. 조상, 조하
3. 운행변경
4. 반복변경
5. 순서변경
6. 운전홀지
7. 운전선로 변경
8. 착발선변경
9. 합병운전
10. 단선운전
11. 차량교환

제 19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규정제 45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전차운전위급중
개 정 규 정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차운전위급
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 표제 "세부작업지침"을 "운
전작업 내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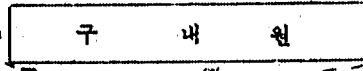
제 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조 (완장의 착용) 차장, 구내원, 조차원, 적임자, 작업책임자 및 견별목간수등은 작업중 다음 각호에 의한 완장을 원팔에 착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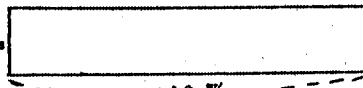
1. 차 장

95%  (붉은바탕에 흰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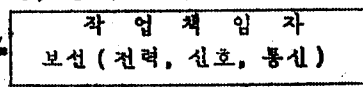
2. 구내원, 조차원

95%  (녹색바탕에 흰글자)

3. 적 임 자

95%  (흰 바 탕)

4. 작업책임자 (보신, 전력, 신호, 통신)

95%  (동 글자) 군청색

5. 간 수 (견별목)

95%  (황색바탕에 녹색글자)

제 22조 다음에 제 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2조의 2 (지연열차의 회복) ① 운전사는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는 허용속도 범위내에서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역장 또는 차장은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는 여객취급 또는 기타 작업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소정의 정차시분 단속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7조 (역장의 열차감시) 역장은 열차의 도착, 출발 또는 통과할 때에

는 열차감시물 하여야 한다. 이때 신호, 신호의 상태 여객의 상황에 주의하여 감시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운전사 또는 차장에게 비상정차 수배를 하여야 하며 전호기 또는 전호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열차에 대하여는 지하철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감시물 대행시킬 수 있다.

1. 대용패색방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2. 시발착 및 중발착 열차
3. 대용수신호에 의하여 열차를 취급할 때
4. 출발지시 전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

제 29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9 조 다음에 제 29 조의 2 와 제 29 조의 3 을 각각 신설한다.

제 29 조 (신호의 주시와 진로에 대한 주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는 진로에 대한 신호를 주시하여야 하고 운전진로상대에 주의하여야 한다.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 또는 최 전부 이외의 운전실에서 운전할 때 전부에 승무한 차장 또한 같다.

제 29 조의 2 (운전명령의 전달) 운전명령은 다음에 의하여 관계제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1. 정거장 및 차량공작소에서는 운전명령의 요함을 관계제원의 출동견제시판에 게시할 것
2. 승무원리소에서는 운전사, 차장에게 별표제 1 호 서식의 달시전달표에 의하여 열람시킬 것
3. 전 각호의 명령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정리할 것

4. 당일시행하는 운전명령으로써 관계제원의 출근후 수보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그 요항을 당해 제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계시관 및 달시 전달표에 적색으로 기입할 것

제 29조의 3 (운전명령의 주지) 운전관계 제원이 출근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계시된 운전명령을 열람하고 담당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하여야 하며 운전사 및 차장은 승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3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0 조 (승무원에 대한 통고) ① 열차운전중의 승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할 때에는 운전사령이 발행한 운전지령서 (전송용)에 의하여 역장이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사령이 운전지령서를 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령전화로 역장에게 지시하여 대행 발행케 하거나 또는 열차무선으로 승무원에게 직접 통고할 수 있다. 이때 통고수령자 통고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번호	통 고 사 항	통 고 대 상 자
1	규정 제 37 조의 2 각호로서 임시로 시행할때	운전사 및 차장
2	폐색방식 또는 폐색구간을 변경할때	운전사 및 차장
3	신호기의 불량을 알릴때	운전사 (필요시차장)
4	상치신호기에 의하지 않고 수신호에 의한때	• • •
5	임시로 서행에 필요할때	운전사 및 차장

제 31 조 다음에 제 31 조의 2 (사구간의 타력운전), 제 31 조의 3 (역행 및 타행운전의 이행) 제 31 조의 4 (전차선 구분장치의 정차금지) 제 31 조의 5 (이전압구간의 운전금지)를 각각 신설한다.

제 31 조 2 (사구간의 타력운전) 운전기사는 전차선 사구간 표지설치구간을 운전할 때에는 타력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3 (역행 및 타행운전의 이행) 전차를 운전할 때에는 타행표지설치구간에서는 타행운전을, 역행표지설치구간부터는 역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4 (전차선 구분장치의 정차금지) 운전기사는 운전중 부득이한 사유로써 정지할 경우 "판타그라프"가 전차선 구분장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5 (이전압구간의 운전금지) 전기방식이 다른 전차는 이전압구간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회송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자력으로 운전할 수 없다.

제 37 조 다음에 제 37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7 조의 2 (운전정리의 주요사항) 운전정리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 발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킴을 말한다.

2. 조상, 조하

열차의 운전시각을 소정의 시각보다 일정시각을 앞당겨 운전함을 조상, 일정시각을 늦추어서 운전함을 조하라 한다.

3. 운행변경

열차의 운행구간을 일부변경, 단속 또는 연장함을 말한다.

4. 반복변경

열차의 지연등으로 전차의 반복역에서 소정의 증당순서를 변경함을 말한다.

5. 순서변경

선발로 할 열차의 운전시작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행순서를 변경함을 말한다.

6. 운전휴지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구간간에 대하여 특정열차의 운전을 중지함을 말한다.

7. 운전선로 변경

선로소정의 운전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전선로를 변경함을 말한다.

8. 착발선 변경

정거장 구내에서 열차의 소정의 도착 또는 출발선을 임시로 변경함을 말한다.

9. 합병운전

2열차를 합병하여 1열차로 운전함을 말한다.

10. 단선운전

복선운전을 할 구간에서 일방선로에 열차사고 또는 선로고장등으로 인접 정거장간을 통하여 열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경우 타방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하열차를 운전시킴을 말한다.

11. 차량교환

차량의 고장등으로 소정의 운용순서를 변경하여 타차량과 교환함을 말한다.

제 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7조(구내운전의 개시와 진로의 확인) ① 구내운전을 할 때에는 운전사는 그 시단에 설치된 입환신호기의 진행신호 현시와 역장 또는

조차원의 시동전호에 의하여 운전울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구내에서 전철을 위한 구내운전으로 차장이 승무원 경우 시동전호를 차장이 할 수 있다.

② 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종단은 입환신호기 또는 차량정지표지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 1항의 경우 운전개시전에 역장, 조차원은 제 54조에 의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역취급에 의한 때는 궤도 조명판의 확인으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전 1항의 시동전호는 필요에 따라 역장, 조차원 및 차장 이외의 책임자나 특수지시장치에 의한 대행을 지하철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

(누) 1. 조차원이 하는 시동전호는 입환전호방식의 "기타"의 전호에 외하는 것으로 한다.

2. 차장이 하는 시동번호는 출발전호의 "부자" 방식에 외하는 것으로 한다.

제 61 조 다음에 제 61조의 2 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1 조의 2 (전철기 취급시의 확인) 전철기를 취급하는 제원은 전환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전철기를 통과하여 전환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62 조 다음에 제 62조의 2 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9 조의 2 (전철기 전환후의 확인) 전철기를 취급하는 제원은 이를 전환후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집중 제어방식의 제 1종 제전연동장치 일 때는 궤도 조명판으로 전 토구성표시를 확인할 것

2. 표지부 전철기는 정지가 완전히 전환되고 구에 삽입되었음을 확인한

3. 수병전철기, 전동전철기, 전기전철기 및 발조전철기를 수동으로 전환하였을 때는 전철기가 완전히 전환되었고 침단케조가 기본케조에 밀착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진공 전철기 및 전기전철기는 배정을 확인하고 "스위치"를 개로상태로 두었다가 열차 또는 차량 통과후 폐로로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1 조 ②항 다음에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폐색의 취급 및 승인에 대한 통고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대역장에게 대하여 "00열차폐색"이라고 통고할 것
2. 전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00열차폐색 승인이란고 응답할 것

제 10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2 조 (폐색의 해제) ① 복선 지도자착 또는 지도자착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열차가 도착하였을 때 역장은 지도자의 하차불 확인하고 상대역장과 다음에 의하여 개통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일부 차량 유류하고 도착하였을 때는 개통수속을 할 수 없다.

1. 상대역장에게 00열차도착이라고 통고할 것
2. 전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00열차도착승인이라고 응답할 것

② 고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열차가 폐색구간의 도중에서 회행하여 도착하였을 때는 상대역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할 것

제 103 조 다음에 제 103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3 조의 2 (폐색구간 상태의 표시) ① 폐색구간 양단의 정거장 역장은 다음에 의하여 구간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폐색수속을 하였을 때 열차폐색구간에 있음의 표시를 특설의 전화기에 게시할 것
2. 개통수속을 하였을때 열차폐색구간에 없음의 표시를 특설의 전화기

에 게시할 것. 폐색수속을 취소하였을 때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각호의 상태표시 표의양식은 다음과 같다.

1. 복선지도자식용

가. 상본선용

폐 색 표 ::간 상선열차폐색구간에있음 80% 백색바탕
400%

폐 색 표 ::간 상선열차폐색구간에있음 80%
400%

나. 하본선용

폐 색 표 ::간 하선열차폐색구간에있음 80%
400%

폐 색 표 ::간 하선열차폐색구간에있음 80%
400%

다. 지도식

폐 색 표 ::간 열차폐색구간에 있음 80%
400%

폐 색 표 ::간 열차폐색구간에 있음 80%
400%

제 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8 조 (지도자의 승하차) ① 역장은 복선지도자식에 의하여 운전하는 열차를 정거장으로부터 출발시킬 때에는 폐색수속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폐색구간에 대한 지도자를 운전사와 동승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역장은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도자를

하차시켜야 한다.

제 14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6 조 (신호현시상태등의 환호) 운전사 차량 및 신호를 주시토록 정하여진 제원으로서 신호를 확인하였을때 상호 또는 단독으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호하여야 한다.

(주) 신호를 주시토록 정하여진 제원이라 함은 역장, 조차원, 구내원, 신호원, 유도원 및 운전사행동을 말한다.

제 151 조 표시방법중 지하철선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51 조 양 식

신 별	신 호 구 분	진로가중앙 으로부터 좌측선도로 개통되었을 때	진로가 중앙진로 로 개통 되었을때	진로가 중앙으로 부터우측 진로로개 통되었을 때	진로가 주본선으 로 개통 되었을 때	진로가 부분선으 로 개통 되었을 때	진로가 도착선으 로 개통 되었을 때
지 하 철 선	색 신 호 등 기 용 식						

제 184 조를 다음에 제 2 항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184 조 (수신호의 현시방법) ②
수신호 대신에 수신호 대응기를
사용할 때의 현시방법, 색채 및
현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류	정지신호	진행신호
주 간 및 야 간			

(부) 수신호 대응기는 관제전철기와 연동되고 열차 또는 차량이 진입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정지신호가 현시되는 장치를 갖추는 것으로 한다.

(3) 전철의 수신호 대응기의 설치장소는 지하철본부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 186 조 다음에 제 186 조의 2 를 신설한다.

제 186 조의 2 (수신호 예고후의 취급) 신호기 고장가타로 인하여 수신호 또는 수신호 대응기로서 대응할 것을 승무원에게 통고하였을 때는 고장복구한 경우라도 수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복구하여 상치 신호기에 의한 것을 재차 통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88 조 (수신호 및 수신호 대응기의 현시위치) ①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대한 수신호 및 수신호 대응기의 현시 및 설치위치는 다음에 의한다.

1. 수신호 - 당해 신호기 설치 위치

2. 수신호 대응기 - 당해 신호기 하위에 설치하여 유도신호기 또는 진로표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 하위에 설치한다. 다만 수신호에 있어 그 현시가 열차에서 인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그외방 적당한 위치에서 현시할 수 있다.

② 정거장에 2 개 이상의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었을 때의 수신호 및 수신호 대응기의 현시 위치는 최외방의 신호기에서 현시하여야 한다.

제 20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02 조 (출발전호의 요건) 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차장은 출발신호기 (또는 신호중계기) 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의 현시를 확인 후 운전사에게 대하여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역장의 출발지시 전호가 있어야 한다.

1. 대응폐색방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출발하는 열차
2. 시발 또는 종발열차 일 때
3. 수신호에 의하여 출발할 때
4. 출발지시전호를 지정받은 정거장일 때

제 263 조 다음에 제 265 조의 2를 신설한다.

제 265 조의 2 (열차안전확인외의 집무전호) ① 역장 및 차장은 열차가 정거장에서 출발후 열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을 때는 적당한 시기에 상호 다음에 의하여 안전확인외의 집무전호를 하여야 한다.

이때 전호는 차장이 먼저 하는 것으로 한다.

주간: 우수를 수평으로 펴는다.

야간: 백등을 좌우로 흔든다.

(주) 1. 지하철 구간에서는 주, 야간 같이 주간방식에 의한다.

2. 적당한 시기라 함은 최후부 차량이 승강장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

② 전항의 집무 전호는 제 27 조에 지정된 책임자도 시행하여야 한다.

제 26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67 조 (인접선로를 지장한 경우의 방호) ① 정거장 외에서 탈선전복으로 인접선로를 지장하였을 경우에는 속행열차에 대한 방호를 하기 전에 그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열차에 대하여 지장 지역의 전후 양 방향에 제 2종 방호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장선로가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일 때에는 거화신호를 현시한후 즉시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여야 한다.

② 부선구간에서 정거장 외를 운전중 인접선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속히 열차를 정지시키고 당해 선로의 지장지역의 전후 양방향에 대하여 제 2종 방호를 한후 운전사령 또는 다음역 도착후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열차가 진행하여 오지 않는 방향을 확지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방향에 대한 방호는 생략할 수 있으며 수도권 C. T. C 전철구간에서는 제 1종 방호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 27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7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77조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열차가 정지한 경우의 방호)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정거장외에서 열차사고 기타로써 정차하였을 때 차장은 속히 다음 각호의 방호수배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철 C. T. C구간에서는 후방에 주의하면서 후속열차가 접근하여 위험을 느꼈을 때에는 열차 후방 100 m 이상 거리에 신호회로에 의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2. 수도권 C. T. C 전철구간에서는 속히 열차의 후방에 제 2종 방호수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차시분이 1분이내의 단시분으로 인정될 때에는 정지수신호를 대응할 수 있다.
3. 전 1항 및 2항의 경우 전차량이 탈선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치 않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거화신호를 현시한후 즉시 단락용 동선으로써 이를 단락하여야 한다.

제 277조의 2 (자동폐색식 시행구간 반자동의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열차정지한 경우의 방호) ①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정거장외에서 반자동의 신호기 또는 이에 대응하는 수신호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열차가 정지한 경우 차장은 속히 열차의 후방에 정지신호를 현

시하고 열차 후방에 주의 하고 후속열차가 접근하였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열차의 후방에 거화 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② 전향의 경우 수도권 C. T. C 전철구간에서 속행열차로 부터 정지 수신호의 인식거리가 300 미터 이상되지 않을 때에는 열차 후방 100m 이상의 거리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 전 제 1항의 경우 전 차량의 탈선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치 않을 열차가 있을 때에는 먼저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여야 한다.

④ 전 제 1항의 경우 그 후방의 신호기가 반자동의 신호기인 경우에는 방호를 하지 않는다.

제 283 조 다음에 제 283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83 조의 2 (운전허가자가 승차치 않은 경우의 처리) ① 복선지도자식 지도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정당한 운전허가자가 승차치 않은 것을 발견한 운전사는 즉시 열차를 정차 시키고 그 사유를 차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전 항에 의하여 정차하였을 때 차장 및 운전사는 열차의 전후 양방향에 대하여 제 2 중 방호를 한후 즉시 운전사령 또는 최근 정거장역장에게 사유를 통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도권 C. T. C 전철구간에서는 제 1 중 방호를 하여야 한다.

③ 전화 불통으로 전향의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운전사는 시시 단급 기척수령의 전호를 하고 15 KM/H 이하의 속도로써 운전할 수 있다.

제 28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87 조 (선로등 고장으로 열차를 서행시키는 경우의 조치) 정거장의

에서 설로 또는 전차선등의 고장 또는 지장이 있을 때 서행에 의하여 차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 288조에 의하여 열차를 일단 정지시킨후 운전사에게 사유를 통고하고 협의할 한 후 서행 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제 28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88 조 (신호등 고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선제원등의 조치) ① 정거장의에서 설로 또는 전차선 등의 고장 또는 지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차 운전상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보선제원 또는 전기제원은 즉시 해당역의 전후 양방향에 제 2종 방호를 한후 그 사실을 운전사령 혹은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가 진행하여 오지 않은 방향을 확지하였을 때에는 그 방향에 대한 방호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현장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전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C. T. G 전철구간에서는 제 1종 방호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조의 경우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단락용 동선으로 폐도회로를 단락하여야 한다.

제 301 조 (속도제한표의 표시방법) 중 (ㄱ) 2호 다음에 3호를 신설한다.

(ㄱ) 3. 사각형은 분기부용, 원형은 본선 및 측선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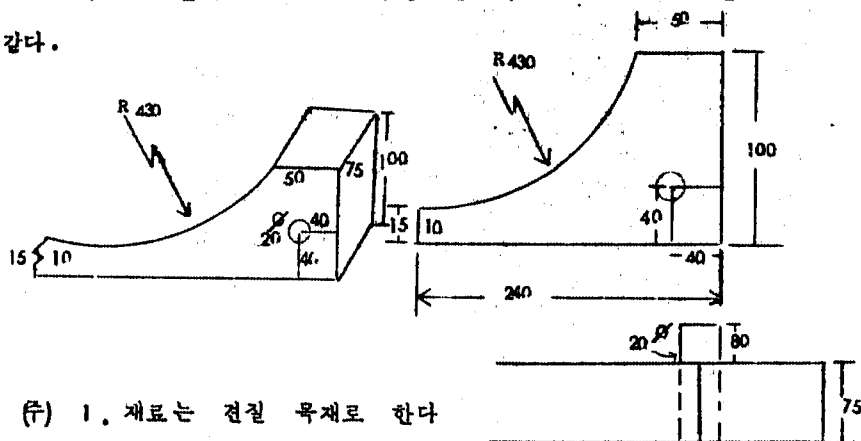
제 303조에 (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ㄱ) 사각형은 분기부용, 원형은 본선 및 측선용으로 한다.

제 316 조 다음에 제 3 장 차물저를 신설하고 제 317 조 내지 제 320 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3 장 차 문 지

제 317 조 (수용차문지의 규격) 수용차문지의 형식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주) 1. 재료는 전철 목재로 한다

2. 착색은 전채물 백색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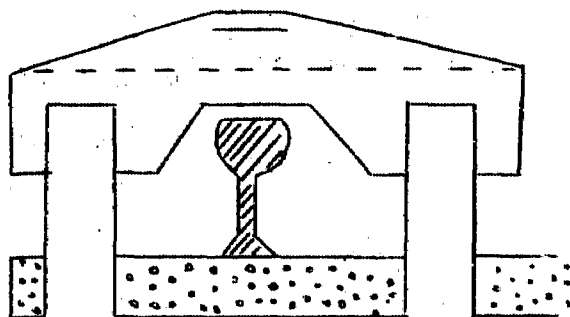
3. 치수는 %로 한다.

제 318 조 (반전식 차문지의 설치) ① 차문을 유치시키는 정차장 기타 상소로써 구배관계로 의하여 유치차량이 일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차량일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전식 차문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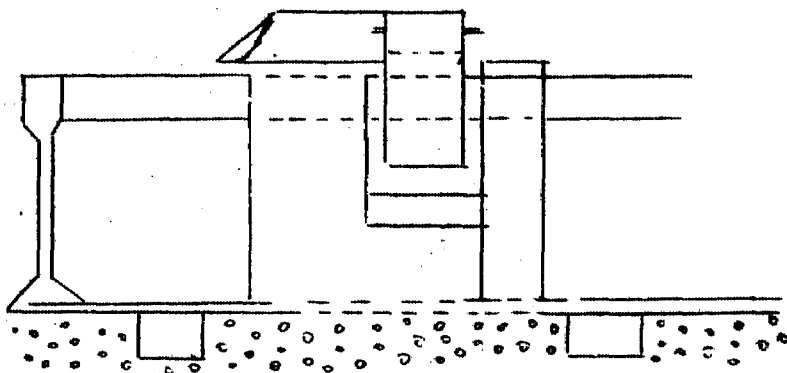
② 반전식 차문지의 설치는 관계소속장의 판단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본부장이 지정한다.

제 319 조 (반전식 차문지의 규격) 반전식 차문지의 목재로서 상반은 적색, 하반은 백색 (페인트)로 도장하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단면도



측면도



제 320 조 (반전식 차륜지의 폐색)

반전식 차륜지는 그 일단을 고정하여 반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륜유치중 입환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폐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수

사업 관리규정 제 46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사고 복구
관리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 사고 복구
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조 (사고복구의 우선순위)

사고 복구 및 처리에 있어서는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 순위 : 인명구조작업

제 2 순위 : 선로개통 (본선 및
동력차출고선지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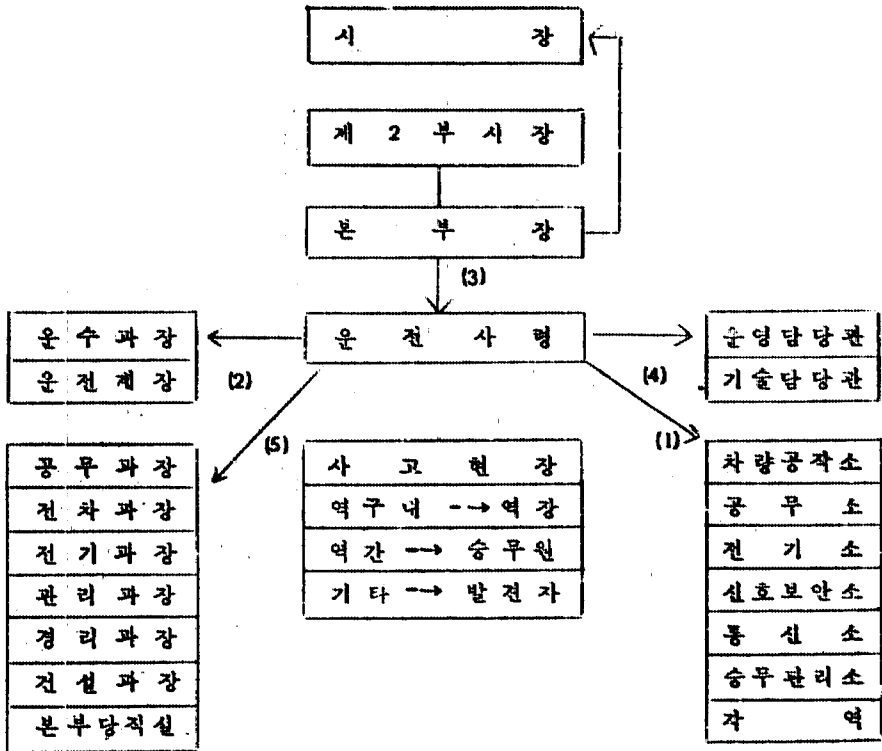
별표 제 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3 호>

운전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제통도



본청당직실

운전사령의 전화연락분담

A	반	(1)번 연락
B	반	(2)(3)번 연락
C	반	(4)(5)번 연락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수사업 관리규정 제 47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선로 지장
취급 규정 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 선로 지장 취급
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조 제 1항중 「절차물 필하고
트로리물 사용할 때에는」를
「절차물 필하기 전에」로 「관
제 소장에게 보고하고 운전사령
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를 「관
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 15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항의 트롤리사용의 통고를 받
은 역장은 운전사령에게 그 내
용을 보고하여 트롤리사용에 지
장이 없으면 운전지 조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제 15조 제 2항 다음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트롤리사용의 통고를 받
은 운전사령은 전선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관제 역장에게 전선
에 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 16조를 삭제한다.

제 17조 제 6호중 「협의한 운전구
간을 지나서 사용할 때에는」을
「협의한 운전구간을 지나서 작
업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때에는」로 한다.

제 19조 제 1호 「직선부 및 반경
300 이상의 곡선 - - - - 35/」
를 「직선부 및 반경 300 이상의
곡선의 전인 운전경우 - - - - 35/」
로 한다.

제 19조 제 5호 다음에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단차의 경우 - - - - 45 /

제 20조를 삭제한다.

제 23조 제 2항 다음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표의 규격과 보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가. 통표의 규격 및 보관

현업별	규격 및 색상	트로리사용시 보관책임자	트로리 사용 없음시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공무소	10 X 8 적색	작업지휘자	트로리유치역	역장
건기소	" 황색	"	"	"
선호소	" 녹색	"	"	"
차량공작소	" 백색	"	"	"

나. 보관장소의 트로리유치역은 지하철본부장이 지정한다. 다. 초속번 트로리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 트로리 운전시에는 해당 색깔 별 및 일련번호별의 통표를 휴대 하여야 한다. 별지 제 3 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2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변경 시설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시설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 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며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8. 19. 서울특별시장
---	--

가. 노선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m	100 m	충산 93-1	증산산 10-49	
변경	"	"		"	130	증산산 12-24	"	위치일부변경
기정	"	"		"	240	홍은산 26-90	홍은산 26-89	
변경	"	"		"	240	"	"	위치일부변경
기정	"	"		"	164	홍은산 26-4	홍은 26-20	
폐지	"	"		"	164	"	"	건설사업 소관 통계회선 폐지
신설	"	"		"	72	홍은산 26-4	홍은 26-74	
신설	"	"		"	21	화곡동 29-96	화곡 29-96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 제 128 호

서울도시계획시설 (지하보도)
결정 및 지적 승인

1. 당시 도시계획시설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

시 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중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8. 20.

서울특별시장

가. 지하보도 (지하상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	비 고
신설	방산시장앞 지하보도 (지하상가)	중구방산동 7 의 3 앞 도로	폭원 20 m. 연장 36 m 전면적 1,049.2 m. 상가면적 317.4 m ²	출입구 4 개소 (폭 3 m)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중구청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 제130 호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가. 시설조서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8. 22.

서울특별시장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영	등	포	상	가	영	등	포	동
5	가				18	외	1,060	
삼	구	시	장		19	외	1,180	
영	등	포	로	타	리	시	장	
20	외				1,832			
남	서	울	상	가	16	외	2,606	
영	신	상	가		18	외	2,230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 제131 호

도시계획(재개발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 지적고시

1. 도시계획(재개발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설치 및 변경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8. 22.

서울특별시장

가. 특정가구정비지구 일부 변경 결정조서 (폐지)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남창 제 1 지구	남창동 일부지역	6,688	(감) 6,688	0
남창 제 2 지구	"	3,234	(") 3,234	0
남창 제 3 지구	"	4,400	(") 4,400	0

나. 재개발사업 일부변경 결정조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남창 제 1 지구	남창동 일부지역	6,688	(감) 1,848	4,840
남창 제 4 지구	"		(증) 1,848	1,848

다. 재개발사업 신설결정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신 설	광화문지구	세종로 및 종로 1가 일부	8,730 ㎡

※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서울특별시 고시 제132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 8 . 22 .

서울특별시 장

가. 시설 (학교) 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남강중 · 고등학교	관악구 신림동 627 의 1 의 4 필지		37,792			
유석국민학교	마포구 망원동 467 의 4 호		4,350			
※ 별첨 : 도면표시와 감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133 호 비로 판매 등록 고시 다음과 같이 비로단속법 시행령 비로판매 등록사항				제 6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 1975 . 8 . .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비로의 명칭	보증성분량	성명	명칭	주사무소	유효기간
6 - 1	아미노산발효 부산비로 (액)	질소 4.0 % 가리 2.5 %	이 휴	서울미원주식회사	도봉구 방학동	75.8.10 - 78.8.10
6 - 2	"	"	안영술	서울미원비로 한주대리점	도봉구 마야동 164-6	75.8.21 - 78.8.10
서울특별시고시제 134호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 제 3 조 동법시행령 제 1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5 . 8 . 25 . 서울특별시장		

사 방 지 의 지 정 내 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
시	구	동					시	구	동		
서울	중	회현 1가	산 1-16	임야	1.8330	0.5700	서울	중	을지로1가181		현우산업
"	"	"	산 1-17	"	0.2208	0.1300					산림청
"	"	장충 2가	산 14-48	"	7.4213	0.3000					"
"	"	"	산 5-16	"	0.6220	0.6220					반공연맹
"	"	"	산 5-18	"	0.2207	0.2207					"
"	동대문	면목	산 8-3	"	0.7900	0.5000	서울	동대문	면목		최재근
"	"	"	산 2	"	1.1600	0.5000	"	종로	관철		조선옥
"	"	"	산 3	"	1.1700	0.5000	"	동대문	면목		최재근
"	"	"	산 4	"	0.6000	0.3000	"	"	"		"
"	"	망우	산 60-2	"	0.4900	0.4000					
"	"	"	산 57-3	"	0.73700	0.6000					서울특별시
"	"	"	산 33	"	0.8500	0.8500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	성동	광장	산 74-13	"	0.3600	0.2000	서울	성동	광장 413-10		이인회
"	"	"	산 99	"	1.1200	0.3000					서울특별시
"	"	"	산 102-2	"	0.4300	0.0700					"
"	"	"	산 104	"	1.6100	1.6100					"
"	"	구의	산 28-1	"	0.5900	0.1300					"
"	"	"	산 39	"	0.8500	0.8500					"
"	"	용봉	산 8-9	"	1.0504	1.0504					"
"	"	가락	산 40	"	2.0300	2.0300	양주군	은염	용암리 771		한승교외 1인
"	"	"	산 46-1	"	2.5000	2.500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시	구	동	성명	
서울	성동	가락	산 53	임야	0.4100	0.4100	서울	종로	명륜3가 679	김길한
"	"	"	산 47	"	0.6000	0.3000	"	"	신교 1-17	이희범
"	"	"	산 51	"	0.4300	0.2000	"	동대문	제기 992	배영철
"	"	방이	산 98	"	1.3000	0.6000	"	성동	구외 509-1	이종철
"	"	명일	토 86-1	"	1.2418	1.2418	"	서대문	구산 816-11	현거분
"	"	"	토 86-6	"	0.2428	0.2428	"	"	"	"
"	"	"	토 86-7	"	0.0810	0.0810	"	성동	명일 산 19	이범수
"	"	"	토 97-1	"	0.5513	0.5513	"	종로	삼창 142-1	허영진
"	"	"	토 97-2	"	0.5513	0.5513	"	"	"	외 1인
"	"	"	토 97-3	"	0.8217	0.8217	"	"	"	"
"	"	고덕	산 2	"	2.0200	2.0200	"	중	필동 2가 82-2	김금숙
"	"	"	산 3-1	"	1.1000	1.1000	"	"	"	"
"	"	"	산 10-1	"	0.7800	0.7800	"	"	"	"
"	"	"	산 93-2	"	2.7700	2.7700	"	성동	광장 322-17	하은외 8인
"	"	"	산 93-3	"	6.4600	6.4600	"	"	구외 214-2	신영균
"	"	마천	산 1-4	"	0.9800	0.9800	"	동대문	회기 60-55	이준자
"	"	"	산 30	"	0.4300	0.4300	"	성동	철호 409	이담열
"	"	"	산 31-1	"	0.2300	0.2300	"	서대문	흥제 11-47	김용환
"	"	"	산 25	"	0.3100	0.3100	"	성동	화양 135	정생덕
"	"	"	산 16-3	"	0.8400	0.8400	"	서대문	대조 187-50	박준웅
"	"	"	산 29	"	0.2400	0.2400	"	성동	오금 590	김영욱
"	"	"	산 21-1	"	0.1000	0.1000	"	"	방이 357	김상봉
"	"	"	산 28	"	0.1600	0.1600	"	"	성수2가 289-24	강경성
"	"	"	산 3-1	"	1.5500	1.5500	"	"	흥익 110	신규철
"	"	"	산 16-1	"	1.5700	1.5700	"	용산	청파 1-17	김원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시	구	동	성명
서울	성동	마천	산 24	임야	0.5100	0.5100	서울	성동	사 근 290	홍성준
"	"	장지	토 155-3	"	1.3223	1.3223	충남	대천	유천 210	안문식의 9
"	"	"	토 193-2	"	0.7518	0.7518	"	"	종천 임 씨	공주파종중
"	"	"	토 194-2	"	0.6224	0.6224	서울	마포	합정 385-1	이찬성
"	"	"	산 5	"	0.1000	0.1000	"	성동	능동 438	이세룡
"	"	"	산 4	"	0.7400	0.7400	"	"	신당 411-6	김춘배
"	"	"	산 3	"	0.8600	0.8600	"	"	장지 181	이수남
"	"	문정	산 25-1	"	1.3600	1.3600	"	종로	종로 5가 182-19	심상범
"	"	"	토 246	"	2.8922	2.8922	안주군	공산면	삼거리 909	안석규
"	"	천호	산 43-2	"	0.2300	0.2300	서울	동대문	용두 20-1	이수옥
"	"	성북	토 224-29	"	0.5324	0.5324	"	성북	성북 225	한익모의 1인
"	"	"	토 224-26	"	0.1000	0.1000	"	종로	명륜1가 33-77	허태원
"	"	"	토 224-33	"	0.0912	0.0912	"	마포	아현 463-59	강신석의 1인
"	"	"	토 224-31	"	0.0200	0.0200	"	동대문	제기 128	김정자
"	"	"	토 224-30	"	0.0100	0.0100	"	성북	성북 177-78	최두열
"	"	"	산 16-3	"	0.6607	0.5000	"	"	"	서울특별시
"	"	"	산 15-1	"	0.2312	0.2312	"	"	"	"
"	"	정릉	산 87-16	"	23.7826	3.0000	"	"	"	문화재국 문관
"	"	상월곡	산 1-1	"	4.6110	4.6110	"	"	"	"
"	"	"	산 1-41	"	2.2425	2.2425	"	"	"	"
"	"	"	산 6-1	"	1.4815	1.4815	서울	황금점	2정목 25	김동혁 외 4인
"	"	"	산 7	"	0.0417	0.0417	"	"	"	국유
"	"	하월곡	산 2-1	"	6.7101	6.7101	"	"	"	문화재국 문관
"	"	"	산 2-41	"	0.5000	0.5000	"	"	"	"
"	"	중암	산 2-74	"	0.3818	0.3818	"	"	"	국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시	구	동	성명	
서울	도봉	수유	산 60	임야	1.4600	1.4600	서울	도봉	수유	357	신기철
"	"	"	" 61-1	"	1.1700	0.1000	"	종로	종로4가	39	손후복
"	"	"	" 63-1	"	0.3505	0.3505	"	도봉	수유	357	신기철
"	"	"	" 162-50	"	0.4929	0.2300	"	종로	봉익	10-10	김태웅
"	"	미아	" 108-8	"	0.7520	0.7520	"	인천시	용현	59	박준영
"	"	"	" 108-12	"	0.9514	0.9514	서울	종로	가회	11-46	김성섭
"	"	"	" 108-30	"	0.3222	0.3222	양주군	매곡면	금곡리	655	장옥준
"	"	월계	" 126-4	"	0.7100	0.7100	서울	성동	사근	307	엄원섭
"	"	"	" 127-1	"	0.9400	0.9400	"	동대문	청량리	180	전순철
"	"	"	" 155-2	"	0.6100	0.6100	"	용산	원효1가	17-121	이용호
"	"	"	" 155	"	0.5200	0.5200	"	중구	양동	34-27	대한생명 보험 Co.
"	"	"	" 106	"	1.7200	1.7200	"	종로	태화	6-86	이철순
"	"	"	" 108-1	"	0.8300	0.8300	"	동대문	휘경	183-765	고범한
"	"	"	" 108-3	"	1.3500	1.3500	"	"	"	"	"
"	"	"	" 108-4	"	0.7300	0.7300	"	"	"	"	"
"	"	"	" 108-7	"	6.3700	3.0000	"	"	"	"	"
"	"	"	" 114-1	"	0.4000	0.4000	"	도봉	월계	379	손광욱
"	"	"	" 122-2	"	0.4400	0.4400	"	"	"	503	송기장
"	"	"	" 125-1	"	1.3300	0.4000	"	성북	장위	33	최무일
"	"	"	" 114-2	"	1.3500	1.3500	"	"	"	235-1	영광학원
"	"	"	" 125-4	"	0.8900	0.8900	"	"	"	상 33	최무영
"	"	상계	" 123-1	"	12.1200	2.5000	"	중구	남산2가	37-2	윤형신
"	"	"	" 149-1	"	0.8800	0.8800	"	종로	태화	9-7	김건철
"	"	"	" 149-5	"	1.0080	1.0000	"	"	"	"	"
"	"	"	" 149-6	"	0.0400	0.0400	"	"	"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시	구	동	성명
서울	도봉	상계	산 149-7	임야	0.7100	0.7100	서울	종로	해화 9-7	김건철
"	"	"	" 149-8	"	0.2000	0.2000	"	"	"	"
"	"	"	" 150-1	"	3.8000	3.8000	"	중구	남산 2가 271	윤형신
"	"	"	" 150-5	"	0.4600	0.4600	"	도봉	상계 151	이관석
"	"	중계	" 104-1	"	8.0700	0.7000	경기	인천시	서창동 145	기교용외 8인
"	"	"	" 104-4	"	8.6800	1.0000	"	"	"	국유
"	"	"	" 104-11	"	5.5000	0.7000	"	"	"	"
"	"	"	" 104-12	"	6.3700	0.3000	"	"	"	"
"	"	"	" 136	"	1.4900	0.3000	서울	동대문	계기동 산 2	이태순
"	"	도봉	" 4	"	0.0700	0.0700	"	"	"	신장균
"	"	"	" 5	"	0.4900	0.4900	"	"	"	김원훈
"	서대문	수색	" 21-4	"	1.3300	1.3300	서울	동대문	송인 80	박규복
"	"	"	" 21-5	"	0.1204	0.1204	"	마포	산수 255	이운용
"	"	"	" 26-1	"	0.3514	0.3514	"	성북	성북 177-30	황상학
"	"	상암	" 23	"	0.4200	0.4200	"	서대문	상암 378	손본종천
"	"	"	" 26-17	"	1.3615	1.3615	"	"	"	이기호외 6인
"	"	성산	" 11-18	"	0.6500	0.6500	"	성동	신당 251	한양대학교
"	"	"	" 11-19	"	0.3300	0.3300	"	"	"	"
"	"	"	" 11-29	"	0.2400	0.2400	"	"	"	"
"	"	"	" 11-30	"	1.1614	1.1614	"	"	"	"
"	"	"	" 11-31	"	0.7400	0.7400	"	"	"	"
"	"	"	" 19-2	"	0.0505	0.0505	"	마포	서교 339-12	김재동의 4인
"	"	"	" 20-2	"	0.2400	0.2400	"	성동	신당 340-29	백경순
"	"	"	" 23-1	"	1.2106	1.2106	"	마포	동교 136-7	이진권의 1인
"	"	"	" 26	"	0.2000	0.2000	"	"	망원 11-20	권용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점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시	구	등	성명
서울	서대문	성산	토 31-8	임야	0.1409	0.1409	서울	마로	동교 136-7	이진권외 1인
"	"	"	토 31-9	"	0.1409	0.1409	"	"	"	"
"	"	"	토 30-4	"	0.1122	0.1122	"	"	서교 379-12	점재동외 4인
"	"	"	토 39-6	"	0.2507	0.2507	"	"	"	"
"	"	홍은	산 1-129	"	3.9428	3.9428	"	"	"	국유
"	"	"	" 11-47	"	0.1420	0.1420	"	서대문	홍은동 11-18	이우영
"	"	"	" 26-4	"	17.0115	17.0115	"	"	"	"
"	"	응암	" 6-3	"	0.9123	0.9123	"	종로	종로 1가	동국영림Co
"	"	"	" 6-19	"	0.5000	0.5000	"	"	청운 201	이우영
"	"	"	" 6-20	"	0.5000	0.5000	"	"	"	"
"	"	구산	" 27	"	1.1000	0.5000	"	"	관철 18-8	양희석
"	"	누빈	" 28-1	"	1.2600	0.9000	"	성북	안암 3가 133-34	김옥재
"	"	현저	" 2-94	"	2.6117	2.6117	"	중구	도동 2가 131-8	황순화
"	"	연희	" 5-58	"	0.7408	0.7408	"	"	"	서울특별시
"	"	"	" 5-62	"	0.1210	0.1210	"	중	남창 194	남상옥
"	"	북아현	" 1-1	"	13.8725	1.4908	"	서대문	대현 11-1	이화학당
"	"	홍제	" 25-1	"	0.4300	0.4300	"	"	"	국유
"	용산	호창	" 7-1	"	1.4000	0.5000	"	"	"	"
"	"	"	" 9-1	"	25.4000	0.5000	"	"	"	"
"	영등포	시흥	" 36	"	0.4000	0.4200	서울	영등포	시흥 220-2	최양호
"	"	"	" 37	"	0.6000	0.6000	"	중	울지 1가 32	한일부동산Co
"	"	"	" 91	"	8.8500	2.0000	"	"	"	서울특별시
"	"	독산	" 10-1	"	1.8800	1.8800	"	성동	신당 432-778	정노비 외 1인
"	"	"	" 10-2	"	0.2100	0.2100	서울	중	울지 1가 194	아도산업Co
"	"	"	" 12	"	1.3700	1.3700	경기	화성군	남면 남양리	정화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시	구	동	성명
서울	영등포	독산	산 89-3	임야	1.0000	1.0000	서울	영등포	염창 96	손원경 외 1인
"	"	"	" 89-4	"	8.1000	1.6000	"	종로	누상 166-14	김준명 외 1인
"	"	오류	" 5-3	"	0.3300	0.3300	"	"	"	"
"	"	신월	" 22-1	"	4.6200	4.6200	"	"	신문로 1가 1-1	손금순 외 1인
"	"	"	" 29-1	"	7.4500	7.4500				대한보중 보험 Co
"	"	"	" 32-1	"	0.7500	0.7500	"	영등포	신월 141	이양덕
"	"	외발산	" 41-6	"	1.0800	1.0800	"	"	외발산 198	최병래
"	관악	신림	" 52	"	6.4700	6.4700	"	관악	상도 26	김봉진 외 4인
"	"	"	" 56-1	"	217.0000	217.0000	"	신당	신당 405-6	문정숙
"	"	"	" 68-3	"	5.0813	3.0000	"	중	남산 2가 3 2-13	정승일
"	"	봉천	" 9	"	3.2328	3.2328	"	관악	봉천산 6	원정길 외 13인
"	"	"	" 11	"	1.6500	1.6500	"	성동	삼삼 45	
"	"	"	" 12	"	1.2300	1.2300	"	관악	흑석 5-36	목하영
"	"	방배	" 88	"	0.5200	0.5000	"	용산	후암 55-6	김광수
"	"	"	" 92-1	"	74.5900	74.5900	"	중	장충 1가 102	이광수
"	"	"	" 93	"	2.3000	2.3000	"	관악	방배 646	구현동
"	"	"	" 94	"	5.2400	5.2400	"	서대문	노고산 1-59	김옥연
"	"	"	" 95	"	1.2900	1.2900	"	관악	방배 615	유병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시	구	동	면적	
서울	관악	방배	산 96-1	임야	1.5400	1.5400	서울	종로	경운 68	민병수
"	"	"	" 96-2	"	0.3900	0.3900	"	"	"	"
"	"	"	" 97	"	1.8200	1.8200	"	"	"	"
"	"	동작	" 10-2	"	0.0522	0.0522	"	"	"	대웅수
"	"	사당	" 10-1	"	0.4200	0.4200	"	"	"	국유
"	"	"	" 10-3	"	0.2820	0.2820	"	"	"	"
"	"	"	" 10-5	"	2.5510	2.5510	서울	관악	사당 48	강순달
"	"	"	" 10-6	"	0.2618	0.2618	"	도봉	미아 75-67	홍선표
"	"	"	" 12	"	5.3700	5.3700	"	"	"	국유
"	"	"	" 21-1	"	8.4900	3.0000	"	관악	노량진 34	이영남외 5인
"	"	"	" 32-2	"	17.7800	1.5000	충북	옥천외면	금하리 518	동대정씨종중
"	"	"	" 32-4	"	9.5400	0.5000	"	"	"	"
"	"	"	" 32-8	"	6.9620	0.5000	"	"	"	"
"	성동	양재	" 73-1	"	0.5000	0.5000	강원	춘천	중앙로 2가 65-2	허선구
"	"	"	" 73-2	"	0.9913	0.9913	서울	성동	신당 373-91	박정관
"	"	"	" 75	"	0.3400	0.3400	"	중	남대문 3가 14	한국개발금융
"	"	"	" 76-3	"	0.8800	0.8800	"	성북	성북산 2-3	이상천
"	"	"	" 77	"	6.2000	0.2000	"	성동	서초 763	이봉렬
"	"	"	" 28-1	"	0.2700	0.2700	"	서대문	충정 3가 190-1	이봉익
"	"	"	" 78-2	"	1.3300	1.3300	"	"	"	"
"	"	"	" 78-3	"	3.8500	3.8500	"	용산	보광 163	박애기
"	"	"	" 78-5	"	3.3900	3.3900	"	중	장충 1가 33-8	박두학
"	"	"	토 462	분묘	0.4724	0.4724	강원	춘천외면	파동리 279	기계분씨종중
"	"	"	토 463-2	임야	1.1813	1.1813	서울	중	주교 30	이인성
"	"	"	토 526-2	"	8.9423	8.9423	경북	영주	산곡리 875	신한균외 5인
"	"	"	토 538	"	0.5612	0.5612	서울	서대문	만리 2가 231-7	김예환

◎ 서울특별시고시제 135 호

비로제조업허가실효고시

정에 외가 다음과 같이 비로 제조업이 실효되었기 고시합니다.

1975. 8. 26.

비로단속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규

서울특별시 장

허가번호	허가 또는 교부년월일	생산자의주소, 정명및 제조장소재지	비로명칭	보증성분량
1 - 2	75.3.14	1. 주소 및 성명 서울동대문구신설동 92-4 우생 산업 사 김 영 일 2. 제조장의소재지및 명칭 서울동대문구신설동 92-4 우생 산업 사	제 5 종 복합 비로 (액제비로) (일명: 비왕)	농 수 산 부 고시제 2518 호 에 의한 공정 규격

※ 유효기간

자 75. 3. 14.

지 77. 10. 29.

◎ 서울특별시고시제 136 호

도시계획 (공원) 실시
계획인가고시과, 같이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녹지국
공원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연락케 한다.

1975년 8월

서울특별시 장

다 음

1. 건설부고시 제 49 호 (75.4.3) 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바 있는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238-1 소재
동묘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공
원)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1. 사업시행의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송인동 238-1 (동묘)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근린공원
조성 명칭 동묘공원
3. 사업의규모 : 2,823 평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설명

위	치	토 지 지 목	건 물	소 유 자
동대문구 송인동 238-1		2,823 평 사사지	목조한식 기와집 1 동 63 평	국유(문화재 관 리국)
계		2,823 평(9,316㎡)		

6. 착수 및 준공예정일: 75.8. - 75.11.

◎서울특별시고시제 137 호

도시계획통치지구일부
변경(해제)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08 호(75.6.23)
로 변경 결정(해제)된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 통치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
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8. 28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 통치지구 일부변경(해제) 지적승인조서

구 분	위 치	해제면적(㎡)	비 고
명륜구역	종로구 명륜동	29,250	통치지구 해제
한남구역	용산구 한남동	39,000	

첨첨: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보관(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35 호

한계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김포,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제 33 조 및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고 한다.

2. 환지계획 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75. 8. 22.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업명 : 김포,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 사업
2. 변경지역 : 서울시 관악구 사당동, 봉천동, 신림동, 영등포구 동촌동 일부 지역.
3. 필지 수 : 22 필지

4. 변경조서 및 도면 : 조서별첨, 도면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서울특별시공고제 188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 일부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망우추가 및 화양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에정지를 일부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제 47조 및 동법제 55조와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고 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5. 8.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소방관리사위원회
회 공고제 189 호

제 2 회 소방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 시행공고

1975년도 제2회 소방원(지방소방
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97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소방관리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지 급	선 발 분 야	선발인원	시 령 과 목
소 방 원	일반소방분야	35	국사, 일반상식, 일반물리
	운전 분야	15	국사, 일반상식, 도로교통법규

2. 시험 시행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신체검사)

서울특별시내 소재 국, 공립병원
장발행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함.

나. 2차 시험(필기시험)

(1)일시: 1975.9.29(월) 11:00

(2)장소: 1975.9.20(월) 소방본부

계시판에 공고

다. 3차 시험(면접및 실기시험)

(1)일시: 1975.10.14(월) 10:00

(2)장소: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시공고

3.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신체검사): 접수시
신체검사서로 확인

나. 2차시험(필기시험): 75.10.1

(월) 10:00(소방본부계시판에공고)

다. 3차시험(면접및실기시험):

75.10.17(월) 10:00 (소방본부

계시판에 공고)

4. 응시 자격

가. 연령은 23세이상 30세
미만인자. (1945.10.15 ~ 1952
10.14 사이에 출생한자)

나. 지방 소방공무원법 제10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병역
실역 의무를 편한자(단기제대)

다. 신체조건은 신장 165cm이상.

체중 55kg이상. 흉위가 신장의
2분의1 이상인 신체 건강한 남자.

라. 학력및 경력의 제한은 없으나
운전분야 응시자에 한하여는 자
동차 운전면허 보통1종 이상 취
득자.

마. 75.9.1 현재 서울특별시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자.

5. 시험 방법

1 차시험은 선택점사서로, 2 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3 차시험은 면접시험(단, 운전분야 응시자는 운전실기 시험을 추가함)으로 과하되 선행되는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수있다.

6. 응시원서 교부및 접수

가. 기간 : 75.9.15 ~ 9.25.17:00 까지

나. 교부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72-3975)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한함.

나. 사진 3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합판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첨부. (동일원판)

다. 응시 수수료 : 500원 상당액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첨부

라. 선택점사서 1통 : 75.8.1 이후 서울시내. 국, 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채용선택점사서"에 한함.

마. 자격면허사본 1통 : 운전분야 응시자 및 소비자에 한함. (접수시 원본대조)

바. 병적증명서 1통 : 각 시도 병무청장

및 시, 유, 면 동장발행(병적사본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도 가함) 사. 주민등록사본 1통 : 전입일자 기재된것.

아. 군사원호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상기마, 바, 사, 아함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75.10.10 까지 제출 한다.

8. 시험에 있어서의 특전

군사원호 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해당자및 국가 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2조 제1항 자호에 해당하는자는 군사원호 대상자 임용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그시험만점의 10%를 가산한다.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기일내에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나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후 관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 소방원으로 임용하고 보수는 지방소방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10. 특 기 사 항

가. 건축, 전기, 통신, 화공분야의
적중 소지자는 특히 환영함.

나. 응시자는 시험전일 시험장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시험당일은
시험시간 1시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지시
를 받아야 한다.

다. 시험실내에는 응시표, 주민등록
증, 청색, 흑색 볼펜 또는 만년
필의외의 휴대품은 지참하지 못
한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등의 기
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조한것이 판명될 때에는 시험을
정지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
년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울
정지한다.

마. 제출된 응시원서, 응시수수료및
기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

바.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시 소
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람 (72-3975).

◎ 서울특별시공고제 191 호

주택개발유위한제개발
사업실시계획공람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

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옥이동 23 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구역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 18 호
(75.2.8) 및 건설부고시 제
136 호 (75.3.23) 로 사업 실시
계획 인가고시 되었음으로 이를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2. 본 공람 구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중 당시 별도사업계획 (고지
대축화지역) 에 저촉되지 않은자는
도시계획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인가 고시일 (75.8.25) 로
부터 30 일 이내에 분양 신청서
를 제출 (제출처 관할구청 및 출
장소) 하시기 바람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으며 재개발 구역안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의견 제출인에
대한 별도 통지는 본 공고로 가
름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사업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위 치	면 적 (㎡)
육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종로구 육인동 산 3 일대	48,899
금호제 1 "	성동구 금호동산 37 및 행당동산 30 일대	49,518
금호제 3 "	성동구 금호 2 가 산 2, 산 9 일대	71,243
옥수제 1 "	성동구 옥수동 424 일대	64,466
금호제 4 "	성동구 금호 3 가 산 2 - 4 일대	49,795
옥수제 2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성동구 옥수동 424, 산 5 일대	103,399
옥수제 5 "	성동구 옥수동 산 6 일대	37,488
옥수제 6 "	성동구 옥수동 산 12 일대	78,397
상도제 5 "	관악구 상도동 123 일대	79,917
봉천제 1 "	관악구 봉천 1 동 1 번지 일대	172,073
봉천제 2 "	관악구 봉천동 산 94 일대	94,380
봉천제 3 "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일대	180,255
봉천제 4 "	" "	335,205
봉천제 7 "	관악구 봉천동 산 81 일대	176,926
사당제 1 "	관악구 사당동 산 11 일대	45,061
사당제 4 "	" " 산 12 일대	195,231
면목제 1 "	동대문구 면목동 산 78 일대	23,293
면목제 2 "	" " 72 일대	13,878
옥수제 3 "	성동구 옥수동 124, 421 일대	97,984
거여제 1 "	성동구 거여동 288 일대	29,567
거여제 3 "	" 155 일대	41,266
대방제 3 "	관악구 대방동 458 일대	14,688
상도제 8 "	관악구 상도동 산 74 일대	60,318
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다.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 개년		

○서울특별시공고제 19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86 호 (62. 12.

20) 로 고시된 도로 확장 구간내

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

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고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

1975. . . .

서울특별시

공람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 명륜3가-성대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명륜3가-성대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도로 $B=8.0m$
 $L=25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별첨토지조서

6. 착수 및 준공 예정일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순 위	소 제 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명륜동2가				138-7	대	20.4	충무로2가281-8	박 희 영
2	"				137-8	"	20.5	명륜동2가137-2	김 화 자
3	"				137-9	"	5.2	"	"
4	"				137-10	"	8.5	"	"
5	"				140-4	"	0.2		국
6	"				140-3	"	0.9	명륜동2가118-2	김 용 자
	명륜동3가				82-4	"	1.5	명륜동1가36-17	이 성 호
8	"				53-5	"	195.7		국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9	명륜동 3 가				53-6	대	36.0		국
10	"				76-4	"	0.4	전농동 2-1	김산수영
11	"				75-2	"	0.9	명륜 3 가 75-2	이구열
12	"				53-4	"	88.7		국
13	"				54-9	"	2.8	명륜 3 가 54-2	안호삼
14	"				64-9	"	8.1	명륜 3 가 64	김용목
15	"				66-7	"	1.1		
16	"				66-6	"	7.1	명륜 3 가 64	김용목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3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도로 확장 공사 구간
내에 저축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
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
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 .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종로
5 가간 - 6 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로 5
가 - 6 가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도로
 $B = 40 m$
 $L = 520 m$
4.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 별첨 토지 조서
6.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
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 조서

1) 사유지 토지조서									
No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자					
				소		성명			
1	종로 5 가 242-3	도로	3	효제동	192	정	밤	출	
2	" 242-5	대	31	종로 5 가 242-1		이		병	
3	" 258	"	16	승인동 53-10		이	춘	거	
4	" 257-4	"	5	"			"		
5	" 259-1	"	3	연건동 298-5		김	기	석	
6	" 259-3	"	23.4	"			"		
7	" 260-3	"	2			양	원	영	
38	" 260-4		37.7			양	원	영	
8	" 261-3		33	종로 5 가 255-3		시	기	중	
39	" 262-3		46.5	" 265-11		서	남	순	
9	" 269-3		22.5	" 269		차	원	식	
10	" 270-3	대	28.6	" 270-2		김	정	만	
11	" 271-5		50	" 271-2		전	우	열	
12	" (272-2)		34	" 233		김	영	옥	
13	종로 6 가 253-4	구거	15	안사동 425-66		고	학	수	
40	" 253-3		12	종로 6 가 253-3		최	인	섭	
14	" 255-2		22	" 651-21		홍	성	우	
15	" 256-5		41.7	" 12-5		김	사	덕	
16	" 256-6		12.5	종알동 30-52		정	달	영	
17	" 256-1		34.2	종로 6 가 289-2		동대문종합시장			
18	" 263		15.9	"		"			
19	" (263-2)		0.7	"		"			
	264		26			"			
20	" 264-1		4	종로 5 가 355		오	철	삼	랑
21	" 265-2		26	충신동 27-57		이	화	식	

No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권 자	
				주 소	성 명
22	종로 6 가 267-2	대	33.8	종로 6 가 289-3	동 대 문 시 장
23	" 271-5	"	41	창 신 동 197-11	박 응 기
24	" 275-5	"	16.6	" 195-1	최 상 복
25	" 275-4	"	16.6	" 195-1	"
41	" 293-3 (292-5)	"	18.6	권 농 동 648-5	이 응 주
26	" 277-3	"	31.5	종로 6 가 289-3	동 대 문 시 장
27	" 289-30	"	0.1	"	"
28	" 278-2	"	25	" 289-3	"
29	" 289-29	"	0.4	" 289-3	"
30	" 280-2	"	30.2	" 289-3	"
31	" 289-33	"	9.5	남 대 문 로 2 가	한 국 전 려
42	" 289-31	"	5.7	종로 6 가 282-2	김 승 기
43	" 282-3	"	18.7	" 282-2	"
32	" 283-4	"	0.7	" 282-2	"
33	" 283-7	"	0.5	" "	"
34	" 283-6	"	3.3	" "	"
44	" 289-32	"	1.4	종로 6 가 289-3	동 대 문 시 장
35	" 284-2	"	44	남대문로 2 가 5	경 성 권 기
36	" 290-3	"	1.3	종로 6 가 289-3	동 대 문 시 장
37	" 289-28	"	4.3	"	"
	계		811.3		

No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권	자
	종	로 5 가	243 - 1			2	국	유		지
	"	"	243 - 3			27.2		"		
	"	"	258 - 1			2		"		
	"	"	260 - 1			0.1		"		
	"	"	261 - 1	도		12		"		
	"	"	269 - 1	"		32		"		
	종	로 6 가	253 - 1	"		38		"		
	"	"	253 - 2	구	거	17.3	서	울		시
	"	"	265 - 1	도		37	국	유		지
	"	"	266 - 2	"		20	서	울		시
	"	"	267 - 1	"		50	국	유		지
	"	"	272 - 1	"		212.1		"		
	"	"	272 - 2	대		45.9	서	울		시
	"	"	276 - 2	"		21		"		
	"	"	289 - 17			11.3		"		
	"	"	(289 - 27)			13.2	국	유		지
	"	"	279 - 3	대		47	서	울		시
	"	"	281 - 3	"		43.2		"		
	"	"	283 - 2	"		15.3	국	유		지
	"	"	289 - 18			25	서	울		시
	"	"	290 - 1			1.8		"		
	"	"	285 - 3			39		"		
	"	"	286			52		"		
	"	"	287 - 2			35		"		
	"	"	289 - 9			2		"		
	"	"	289 - 10			1		"		
	"	"	289 - 16			575.7	서	울		시
	"	"	287 - 1	도		729	국	유		지
	계					2,072.4				

에	규
---	---

서울특별시 경찰국 의무실 운영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8. 19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 서울특별시예규 제 302 호

서울특별시 경찰국 의무실
운영규정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 예규 제 139 호 (67. 1. 7)

서울특별시 경찰국 의무실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 8. 19일부터
적용한다.

고물영업허가 사무취급요령 폐지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8. 19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 서울특별시예규 제 303 호

고물영업허가 사무취급
요령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예규 제 136 호 (66. 12.
29) 고물영업허가 사무취급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 8. 19일부터
적용한다.

전당포 영업허가 사무취급요령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8. 19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 서울특별시예규 제 304 호

전당포영업허가 사무취급
요령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 예규 제 135 호 (1966.
12. 29) 전당포 영업허가 사무취급요령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 8. 19일부터 적용한다

어린이등 찾기센터운영요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8. 19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인

○서울특별시예규제 305 호

어린이등 찾기센터 운영
요강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 예규 제 131 호 (1966. 12. 29) 어린이등 찾기센터 운영요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 8. 19일부터 적용한다.

비상경계 실시 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8. 19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인

○서울특별시예규제 306 호

비상경계 실시 규정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 예규 제 126 호 (66. 12

29) 비상경계 실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 8. 19일부터 적용한다.

수사지령 운영요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8. 19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인

○서울특별시예규제 307 호

수사지령 운영요강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 예규 제 195 호 (69. 5. 2) 수사지령 운영요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 8. 19일 부터 적용한다.